



보도 일시	2022. 12. 30.(금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2. 12. 30.(금)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영태 (044-201-7340)
		담당자	사무관 임양석 (044-201-7354)

소각·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

- 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소각·매립률 14.4% → 10.3%로 4.1%p 감소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'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' 법률안*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* '자원순환기본법'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,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,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

-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·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.
- 이 제도는 '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'의 전면개정 전인 '자원순환기본법'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,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.

-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, 폐기물의 소각·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·소각률이 15.4%에서 14.4%로 1%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·소각률이 10.3%로 2017년에 비해 4.1%p가 감소했다.

-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-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%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%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'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'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-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“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.9%까지 낮아졌고,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.4%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,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%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.7%까지 올라갔다”라며, “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.1%이고 소각률이 5.2%인 현 상황(2020년 기준)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. 끝.

◆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·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

□ (부과대상) 지자체*(생활폐기물) 및 사업장**(사업장폐기물)

* 주민생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·소각 처리한 지자체

**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·소각 처리한 사업장

< 폐기물처분부담금 연도별 징수액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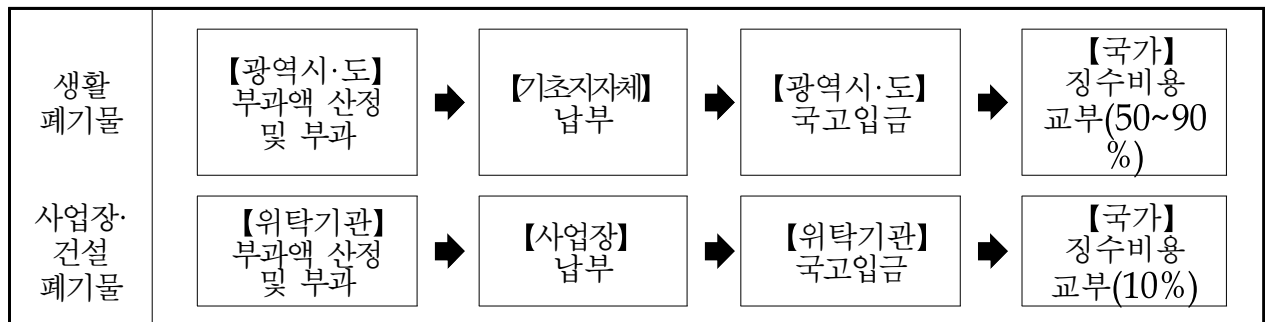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부과액	613,102	3,696	209,895	196,393	203,118

□ (산출방식) 폐기물처분부담금(원) = 폐기물 소각·매립처분량(kg)×
요율(원/kg)×산정지수(최초 1, 그다음 해부터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)

폐기물유형		요율	
		매립하는 경우	소각하는 경우
생활폐기물		15 원/kg	10 원/kg
사업장폐기물	불연성	10 원/kg	-
	가연성	25 원/kg	10 원/kg
건설폐기물		30 원/kg	10 원/kg

□ (징수절차)



□ (재원활용) 국가 및 지자체의 폐기물관련 시설 설치·운영 및 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(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)

* ①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, ②폐기물처리시설,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, ③폐기물의 발생 억제,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, ④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·운영, ⑤폐지·고철 등을 수집·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, ⑥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·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